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 
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6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6월 3일

3. 제안이유
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를 확대·강화하는 내용으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·시행(시행일 : 2022. 1. 28.)됨에 따라,
- 위 법령에서 위임한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·기준·비율 및 수량 등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규정 변경 및 신설(안 제2조)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 확대(안 제6조)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신설(안 제7조)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 확대(안 제9조제1항)
-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 변경(안 제9조제2항)

## 5. 검토내용

-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, 조례의 개정에 따른 “총주차대수”, “기축시설”, “공공기축시설”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함.
- 안 제6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갖춘 시설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함.

(영 제18조의5 참고)<sup>3)</sup>

- 안 제7조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범위에서 규정함.(영 제18조의6 참고)<sup>4)</sup>

3) 제18조의5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)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(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, 이하 “총주차대수”라 한다)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·보급계획·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<개정 2022. 1. 25.>

<이하 생략>

4) 제18조의6(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)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(이하 “전용주차구역”이라 한다)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(이하 “기축시설”이라 한다)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(이하 “공공기축시설”이라 한다)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<이하 생략>

- 안 제9조는 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수량 범위에서 규정함.(영 제18조의7 참고)<sup>5)</sup>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'22. 4. 29.~'22. 5. 1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## 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 충전 및 주차시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.
- 금년 시행된('22.1.28.) 영 부칙 제4조, 제5조, 제6조에<sup>6)</sup> 따라

5) 제18조의7(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) ① <생략>

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<이하 생략>

6) 영 부 칙 <대통령령 제32361호, 2022. 1. 25.>

제4조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한 특례 등) ① 시·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.

<이하 생략>

제5조(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) ① 시·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

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,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, 충전시설 설치기준은 영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('22.7.27. 한) 조례를 개정해야 함.

-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반영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소관부서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와 충전시설 편의사항 개선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,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--

되는 날까지 제1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.

<이하 생략>

제6조(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) ① 시·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.

<이하 생략>